

의안 번호	1932	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25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5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,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6조)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, 용어 문장 등 정비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7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7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·용역·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④ 계약심의위원회(소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7. 8. 9.>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⑥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건”을 “안건”으로, “부정당업자”를 “심의 관련자”로 본다. <개정 2015. 8. 19., 2017. 8. 9.>